

消防検査規則

“소방검사 규칙”

아래내용은 “소방 검사 규칙”(내무부령 제292호, 79. 4. 16字)중 건축과 관련 사항을 추록 요약한 사항이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보 제8224호(그 2) (1979. 4.16일자)참조바람.

피 난 기 구 설 비 점 검 기 준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1. 설 치	외	(가) 각종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이 적정한지의 여부(점) (나) 중축, 증설등으로 수용인원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점) (다) 개축 및 대수선은 없는지의 여부(점) (라) 용도변경은 없는지의 여부(점) (마) 설치할 필요가 없는 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점)
2. 설 치 수	관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① 설치수가 법정수에 합치하여야 한다. (점) ② 중축, 증설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설치수가 증가하여야 한다. (점) ③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 설치수가 합당하여야 한다. (준, 점) ④ 용도변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점) ⑤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점)
3. 적 응 성	외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점) ① 층의 유도에 적응한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층의 높이에 적응한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적응하지 아니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옥외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 치 위 치	관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점) ① 피난시 피난기구의 설치위치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피난구 기타의 피난시설에서 유효한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상호 통일 수직선상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개구부의 크기는 피난기구에 맞는 적절한 크기이어야 한다. ⑤ 피난기구를 조작하기 위한 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⑥ 피난공지내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⑦ 피난공지는 피난상 유효한 통로에 의하여 도로, 공원, 광장등으로 통할수 있어야 한다. ⑧ 강하 공간내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⑨ 피난교는 출입구 이외에 개구부로부터 2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5. 부 착 기 구	5-1 상부 부착기구 기능외관	(가) 충분한 강도가 있는지의 여부 (점) (나) 부식, 변형, 균열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면, 화학섬유제 또는 강제로-뜨는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흠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라) 볼트, 너트등의 고정부재에 부식, 균열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마) 볼트, 너트의 풀림, 이탈, 나사날의 마손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바) 너트 고정편이 부식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5.	부 착 기 구	5-2 하부 부착기구	(사) 회전부는 원활하게 움직이는지의 여부 (점) (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기준에 합치하는 것인지의 여부 (준) (가) 고정고리박스의 두께에 파손, 변형, 이탈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나) 고정고리의 부식, 변형, 균형, 이탈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다) 고정 고리박스에 토사, 물, 부식을 축진하는 것이 채워있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기준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준)	
			6.	부 착 방 법
7.	납 상 태	7-1공 통 대	외 관 및 기 능	(가) 정하여진 개구부에 잡아매어 격납되었는지의 여부 (점) (나) 격납장소의 개구부에 장애물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기구의 하단등을 들어올리거나 잡아당기고 있는 로-프, 체인등은 쉽게 풀수 있는지의 여부 (점)
			7-2구 조 대	(가) 사강방식의 유도 로-프용 모래주머니에 충수가 명수되고 모래주머니의 모래가 빠지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시 (나)수납상은 쉽게 끌어내지는지의 여부 (점) (다) 규칙 바르게 접혀져 있는지의 여부 (점) (라) 유도로-프, 하부고정로-프, 활차등의 부속기구는 영키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마) 몸체 및 부속기구는 가지런히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 (바) 하부고정장치의 위치가 명확하여 쉽게 고정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점)
7.	납 상 태	7-3완 강 기	외 관 및 기 능	(가) 수납상은 쉽게 알 수 있는지의 여부 (점) (나) 부속기구는 정돈이 잘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 (다) 로-프는 바르게 릴에 감겨있는지의 여부 (점)
			7-4피 난 교	(가) 피난교부근의 적당한 장소(교의 양단에 대하여)에 손전등, 로-프등을 수납한 상자류가 있는지의 여부 (점) (나) 피난교는 상시 가교하고 있는지의 여부 (점) (다) 기계장치로 가교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가 쉽게 작동되고 그 기능에 지장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라) 전도식등의 인장기(와이어, 체인)는 쉽게 풀 수 있는 구조인지의 여부 (점)
7.	납 상 태	7-5피 난사다리	외 관 및 기 능	(가) 고정식으로 수납식은 쉽게 펼 수 있는지의 여부 (점) (나) 내림식 사다리(꺾임식사다리)는 자연히 내려가는 상태로 되어있는지의 여부 (점) (다) 내림식 사다리(와이어, 체인식)는 영키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라) 걸침식사다리는 타용도에 사용되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라) 출사다리는 정격으로 감겨져 있는지의 여부 (점)
			7-6피 난용타람	(가) 매입식의 경우에는 발딛임이 가지런한지의 여부 (점) (나) 방화문등은 쉽게 개폐되는지의 여부 (점) (다) 계단식은 급경사로 되어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7.	납 상 태	7-7미끄럼봉	외 관 및 기 능	(가) 강하구의 문, 바닥등이 쉽게 개폐되는지의 여부 (점)
			7-8피 난로프	(가) 로-프는 바르게 감아 수납되고 있는지의 여부 (점) (나) 타용도로 전용되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고정식 이외의 것이 급경사로 설치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8.	8-1	상부지지틀과 의 접착부분	외 관 및 기 능		(가)	상부지지틀과의 부착부분으로서 범포등의 섬유재의 재봉된 상부지지틀(금구)에 파손, 연형, 부식이 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나)	상부지지틀과 상부부착금구가 합치는 부분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여유가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상부지지틀과 구멍눈(鳩目)과를 잡아맨 로-프에 손상, 매듭의 풀림, 열화가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라)	재봉단접기는 3센티미터 이상 겹치고 재봉줄은 3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르게 재봉되고 늘어지거나 당겨지지 아니하도록 개봉되었는지의 여부 (점)			
					조	8-2	몸	체	외 관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① 대본체에 열등의 손상, 열화, 충해, 기타의 강도상의 약점이 되는 손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점) ② 범포제대는 현저히 흡수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점) ③ 몸체의 재봉실의 꿰김, 재봉의 어긋남, 헐거움등 있어서는 아니된다. (점) ④ 산성약품, 유, 기타 대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것이 부착되어서는 아니된다. (점) ⑤ 수직강하방식 대의 긴박부에 탄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점) ⑥ 대의 길이는 층의 높이에 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점)				
	8-3	구	조	기 능						(가)	사강하방식의 대를 펼치는 경우에는 대본체에 협착부가 되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나) 사강하방식의 대를 펼치는 경우에는 좌우가 모두 동일하게 로프가 당겨지는지의 여부 (점) (다) 사강방식의 대를 펼치는 경우에는 대의 경사도는 수평선에 대하여 45도 정도로 되는지의 여부 (점) (라) 수직강하방식의 캡슐과 지반면은 적정한 간격이 있고 너무 늘어지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8-4	안전	장치	외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 ① 보호용깔개, 전락방지용그물, 캡슐 등에 손상, 열화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수직강하방식의 캡슐포는 철제로 된 내측에 있어야 한다. ③ 수직강하방식의 캡슐포의 긴박부를 두어야 한다.
														8-5	부
	8-6	성	능	기능	(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기준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준)									
9.	9-1	조	속	기	기	(가)	조속기에 파손, 변형, 부식, 나사의 풀림 또는 탈락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나) 모래등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9-2	로	프	외 관	(가)	로-프 와이어의 꺾임, 비틀림, 면부분의 손상, 기타 강도상의 약점이 되는 일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나)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등이 부착되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로-프의 말단은 이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벨트 금구에 이어져 있는지의 여부 (점) (라) 로-프의 결목에 봉인이 있는지의 여부 (점)				
										9-3	벨	트	(가)	절목, 마손등 손상 및 열화가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지	9-4 후 크	외 관	(나) 면포제의 것은 지나친 흡습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조정고리가 없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가) 균열등의 손상, 변형, 부식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나) 후-크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의 여부 (점) (다) 강하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9-5 구 조	(가) 로-프의 운행, 강하속도는 적정한지의 여부 (점) (나) 조속기에 매달리어 후-크와 서로 연결되는나사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	
	9-6 성 능	기능 (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기준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준)	
10. 피 난 교	10-1 주요부분		(가) 주요부분이 불연재료로 만들어져 있는지의 여부 (준, 점)
	10-2 구 조 대	외 관	(가) 구조내력상의 주요부분은 강재등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균열, 파손, 부식, 변형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나) 부식성부재의 방청도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다) 알루미늄등 고온에서 녹기 쉬운 부재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단열성 재료로 피복 되었으며 피복부분이 손괴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라) 공공용도로상에 있는 것은 전도식, 신장식등의 이동식으로 되어있는지의 여부 (준, 점)
	10-3 손 잡 이		(가) 손잡이, 손잡이 기둥이 있는지의 여부 (점) (나) 손잡이, 손잡이 기둥이 파손, 변형, 부식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0-4 구 조	기 능	(가) 폭은 60센티미터 이상이며 경사도는 1/5미만이 되는지의 여부 (점) (나) 회전식, 도상식 등의 것은 축부의 회전이 원활한지의 여부 (점) (다) 기계가교 방식의 것은 기계장치(전동기, 전기설비를 포함)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 하게 하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11. 피 난 사 다 리	기 능 외 관		(가) 종봉, 횡봉에 균열등의 손상, 변형, 부식, 기타의 강도상의 약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나) 종봉이 변모제인 것은 지나친 흡습이 되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다) 산성약품, 기타 구성재의 강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부착되지는 아니 하였는지의 여부 (점) (라) 횡봉은 종봉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 (마) 볼트, 너트, 핀등이 부식 탈락이 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1-2 구 조		(가) 수납식의 경우에는 종봉과 횡봉을 잡아매는 축부에 회전이 정격인지의 여부 (점) (나) 신축식의 경우에는 원활한 신축이 되는지의 여부 (점) (다) 활차의 회전은 원활한지의 여부 (점)	
11-3 안전장치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 ① 각돌자, 축제방지장치등의 안전장치에 파손, 변형, 부식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횡봉에 밀거름막이 흠이 마손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안전장치에 스프링, 너트, 핀등이 탈락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횡미끄럼 방지장치등의 톱니모양부분이 마손, 이탈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안전장치의 작동은 상시 정격상내이어야 한다.	
11-4 성 능		기능 (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기준에 합격한것인지의 여부 (준)	
12. 피 난	12-1 매 입 식	외 관	(가) 발딛임대가 균열, 파손, 부식, 탈락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2-2 원 주 식		(가) 원주가 균열, 파손, 부식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2-3 지하층식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 ① 발딛임재가 균열, 파손, 부식, 탈락되어서는 아니된다.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용 타 람	12-4	지상층부	체	외 관	(가)	② 구획된 부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출입구, 탈출구에 있는 방화문이 파손, 변형되는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가)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 ① 디딤판, 측판, 손잡이등이 균열, 파손, 부식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디딤판은 측판에 긴결하여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야 한다. ③ 급경사 구조이어서는 아니된다.							
13. 미 끄 럼 틀	13-1	몸	체	기 능	(가)	균열, 파손, 부식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3-2	구	조	외 관	(가)	상하의 고정기 안전한지의 여부 (점)		
(가) 봉의 하부에 모래무덤, 스폰지, 깔개등 완충재가 상처되어 있는지의 여부 (점) (나) 완충재가 모래인 경우에는 굳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다) 봉에 기름칠을 하여 지나치게 미끄럽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4. 피 난 로 프	14-1	로	프	기 능	(가)	길목등의 손상 열화등이 되지는 아니하였는지의 여부 (점)							
						14-2	후	크	외 관	(가)	면사제의 것은 지나치게 흡습이 되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라) 후-크등 상부 취부재와 로-프의 접결방법이 양호한지의 여부 (점) (마)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격기준에 합치하는 것인지의 여부 (점)													
15. 미 끄 럼 대	15-1	몸	체	외 관	(가)	대판, 측판이 균열, 파손 또는 부식이 되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15-2	구	조	(가)	굴곡부의 측판은 안전한 높이로 되었는지의 여부 (점)			
(가) 미끄럼면에 모래, 흙이 있지는 아니하는지의 여부 (점)													

건축설비점검기준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1.	1-1	방화구획	(건,준)	외 관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 (, 점) 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또는 불연재료된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다음 항목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되어야 한다. 지하층 : 층별구획 1층, 2층 :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명면구획 또는 입체구획) 3층~10층 : 층별구획 (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 : 실내에 면하는 벽, 반자의 마감재료가 가연성일 경우에는 동선구획 및 1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 : 실내에 면하는 벽, 반자의 마감재료가 불연재일 경우에는 동선구획 및 2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 실내에 면하는 벽, 반자의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동선구획 및 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 ②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①항을 적용치 아니한다.							

검	검	항	목	구분	검	검	작	안	및	확	인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등의 객터 또는 집회실 ㉡체육관, 공장, 전신전화국, 교환기실 ㉢계단실 또는 복도로서 내연구조의 바닥, 벽 갑종방화문으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부분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 ③ 건축물의 일부가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기타의 다른 부분과의 완전방화구획이 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합장, 공회당, 집회장, 시장, 공중목욕탕, 차고 등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과 인접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 ㉡ 백화점, 공동주택, 기숙사, 병원, 숙박영업소, 창고등의 용도에 쓰이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 체육관 용도로서 바닥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무도장 유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④ 내화불연구조의 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주차장, 판매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500평방미터 마다 자동 개폐두루마리 철제문 및 보조여단이 갑종방화문이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방화벽(건, 준)	의	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화구조로서 자립벽이어야 한다. ② 벽돌 브록 또는 철근콘크리트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방화벽이 기초부터 전층을 관통하여 동선구획이 되어 있으며 각층별 방화벽은 바닥부터 천정면(그 상층의 바닥)까지 치밀하게 막은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조적조인 경우 그 높이가 10미터가 넘는 두께 24.5센티미터 이상이고 그 높이가 10미터가 넘는 경우는 두께 34.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벽, 두께는 최상부로부터 밑으로 측정된 위치이하 부분) ⑤ 철근콘크리트 벽의 경우에는 그 높이가 10미터까지는 두께 22.9센티미터 이상이고 그 높이가 10미터 이상은 두께 27.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구		1-3	계벽 및 방연벽(건, 준)	의	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립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이 벽이 지붕 널 또는 직상층 바닥까지 치밀하게 닿아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학교, 병원, 진료소(입원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호텔, 여관, 기숙사, 시장의 방화상 주요간벽은 내화구조이며 지붕널 또는 직상층 바닥까지 치밀하게 닿아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평방미터를 넘고 지붕틀이 목조인 경우에는 도리방향의 12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3층에서 10층까지는 동선구획을 하고난 나머지 부분이 500평방미터 마다 일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마다 계벽 또는 천정으로 부터 50센티미터 이상 깊이의 가동 또는 고정식 돌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벽 또는 방열벽의 두께는 1.2밀리미터 이상 두께의 겹강판 또는 50밀리미터 이상의 조적조 또는 기타 불연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⑥ 특별피난계단실이 창문에 면하고 그 창문과 거실의 창문의 간격이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전실과 거실사이의 간벽(내화벽)을 외벽밖까지 연결하여 90센티미터 이상의 돌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특별피난계단전실창문을 급배기구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급기구와 배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⑦ 연립공동주택의 각 동간 거리가 6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동간벽을 지붕위 및 측면쪽으로 90센티미터 이상의 돌출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2. 방 화 문	2-1설치장소	외 관 및 기 능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 ① 방화벽에 설치하는 문은 자동폐쇄 갑종방화문으로서(상시 열려져 있어야 하는 구조의 갑종방화문은 자동화재경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문은 자동폐쇄형방연성 갑종방화문이어야 한다. ③ 특별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문은 연감지기 연동 결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고 전실에는 연기유입을 막는 구조의 방연성 갑종방화문이어야 한다. ④ 특별 피난계단전실과 계단사이의 문은 망입유리를 (0.9평방미터크기) 장치한 자동폐쇄형 을종 방화문이어야 한다. ⑤ 지하주차장등 방화구획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자동개폐두루마리 철재문 옆에는 별도로 사람이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⑥ 비상 에레베이터 전실에 설치하는 문은 자동폐쇄형으로서 연기의 유입을 막는 구조의 방연성 갑종방화문이어야 한다. ⑦ 에스카레이타에 설치하는 자동개폐 두루마리 철재문을 방연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2-1 갑종방화문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 ① 갑종방화문의 구조 및 기능이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 간공철재문은 그 골구가 철재이고 골구양면에 두께 0.5밀리미터 이상 마강판을 견고히 부착한 것. ㉡ 간공철재문은 양면 철판사이(간공)에 불연성 방열재로 충전한 것. ㉢ 단장철재문은 철판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근콘크리트제로서 두께 3.5센티미터 이상일 경우. ② 방화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부착하는 갑종방화문은 그 한쪽의 폭 및 높이가 2.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건물내의 수직교통수단(에리베이터, 계단실 등)을 둘러싼 벽의 문, 복도와외의 간벽문, 수평미닫이 문, 연결문, 갑종방화문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2-2 을종방화문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 ①을종방화문의 구조 및 기능이 다음 각항의 기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 단장철판제인 경우 그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미만인것.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재로서 그 두께가 3.5센티미터 미만인 것. ㉢ 철 또는 망입유리를 장치한 것. ㉣ 골구가 방화재로 하고 그 양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 골구를 방화재로 하고 옥내면에 두께가 0.9미터 이상인 방화목재의 널을 붙이고 옥외면에 함석판을 붙인 것.
	2-3 방화문 설치부대장치	2-3-1 문틀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준,점) ① 여닫이식 문의 경우에는 문틀에는 방화문을 폐쇄한 경우 연기가 유입될 수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을 내화성 벽술개탕으로 하거나 방연성, 내화성 풍소란 또는 문소란(耐火性)을 장치하여야 한다. ③ 여닫이식 문이 쪽이 두쪽문일 경우에는 양쪽을 다같이 닫아서 양문이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닫혀져야 한다. ④ 여닫이식 문의 경우에는 상부벽체 하중에 대한 보강방법으로 [웃인방]을 설치되 연기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2.	방 화 문 설 치 부 내 장 치	2-3-1 문 틀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미닫이식 문의 경우에는 방화문이 닫혀서 닫는 부분에 방진장치가 되어야 한다. ⑥ 미닫이식 문의 경우에는 문지방의 끝이 문이 닫히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며 문설주에 설치된 미닫이문의 지지(持支)철문은 미닫이문이 쉽게 닫히는 구조로 하되 연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⑦ 문틀재질은 압연강판, 차널강 또는 특수강판이어야 한다. ⑧ 한쪽문의 크기는 36평방미터 이하이고 두문짝일 경우 7.2평방미터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⑨ 바닥이 가연성 바닥으로서 연속될 경우에는 경첩부착이 견고하고 문의 닫힘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내화성 문지방이 설치되어야 한다.
		2-3-2 경 첩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첩이 강제폐쇄형으로서 문속에 장치될 경우에는 여닫이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고 열리며 닫히는 속도가 급속완만을 반복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경첩이 문틀부착형일 경우에는 경첩부착이 견고하고 문의 닫힘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3-3 고리쇠 및 자물쇠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리쇠 및 자물쇠는 옥외 피난용 방화문에 설치되며 자동 및 수동적기계 조작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② 7개층 이상의 층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피난용문 (또는 옥외로 통하는 비상문)에 설치하는 고리쇠 및 자물쇠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개방 또는 폐쇄되는 것으로서 그 개방 폐쇄표시가 수신기, 부수신기 또는 종합수신기에 송출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특별 피난계단전실 입구에 설치하는 방연성 갑종방화문에는 자물쇠를 장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그 개폐표시가 수신기 또는 부수신기에 표시되며 전기적 또는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원격조작 될수 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0개층 이상의 층을 가진 건축물의 통로, 복도에 설치하는 제벽용 갑종방화문의 고리쇠 및 자물쇠는 그 개폐상태가 수신기 또는 종합수신기에 표시되며 전기적 또는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원격 조작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2-3-4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폐쇄장치가 도아첵크형일 경우에는 도아첵크가 공기유압식의 것이어야 한다. ② 폐쇄장치가 연감지기 연동 도아첵크형일 경우에는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그 동작표시가 송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폐쇄장치의 폐쇄력은 그에 대한 저항력 보다 큰힘을 내고 폐쇄상태가 완만하고 문의 닫힘이 완벽하여야 한다. ④ 폐쇄장치가 경첩형일 경우에는 문의 닫힘과 열림이 용이하며 닫히는 속도가 완만하고 문의 닫힘이 완벽하여야 한다. ⑤ 미닫이문 폐쇄장치의 경우에는 폐쇄장치의 무게추가 미닫이문을 닫히는데 충분하며 미닫이문을 끄는 끈이 상시 정격이어야 한다.
	2-3-5 상시개방 구조의문의 폐쇄장치의	외 관 및 기능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행로, 복도에 설치하는 구획계벽용문과 특별피난계단전실 또는 상시 개방 되어야 하는 주위조건의 갑종방화문에 장착되어야 한다. ② 전기적, 기계적 또는 뉴머릭적 방법에 의하여 수동개방되고 자동폐쇄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폐쇄장치가 연기감지기 내장형일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폐쇄용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3-1	3-1-1 방화조치	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폐쇄장치가 상시 개방되었다가 비상시 닫히는 구조의 연기감지기 연동형일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폐쇄장치가 공기유압식 도아체크형 또는 단조구조의 것일 경우에는 상시문을 잡고 있다가 연기감지기(또는 뉴머릭 감지기 열감지기)의 연동에 의해 문을 놓아주는 구조의 도아리 리스의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비상전원등에 의하여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⑦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폐쇄장치는 그 개폐표시 회로고장표시, 전원이상 경보표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⑧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폐쇄장치는 현장 수동조작함을 문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현장 수동조작함은 전원표시,문의 여닫힘 표시 기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써 다른 건축물과 인접되어 있을 경우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음 각항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 : 6미터 이내 거리로서 창구 또는 가연성벽의 부분. ㉡ 2층이상 : 10미터 이내 거리로서 창구 또는 가연성벽의 부분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거나 또는 드렌치, 고압물 분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차단하는 외벽 날개벽 기타 담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에스카레이터, 돌림계단,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운반기계용구멍 및 1.5평방미터 이내의 간벽장의 문에는 고압물분무 설비와 배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p>(가) 다음 각항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 3층이상 건축물 ② 지하 2개층 이상을 가진 건축물 단, 3층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100평방미터를 넘는다 하더라도 100입방미터마다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1 (옥 내) 피 난 계 단	4-1-1 설치대상	외 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상에 설치 사용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구조로 되어야 한다. ② 지하 3층에서의 피난계단은 특별계단구조이어야 한다.
		4-1-2 계단설치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단실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부분과 실내로 통하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내화벽으로 둘러 쌓여 구획되어야 한다. ② 계단실에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 또는 예비전원을 갖춘 조명이어야 한다. ③ 옥내로 통하는 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평방미터 이하로 하고 망입 유리블박이 창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문은 갑종방화문이어야 한다. ⑤ 계단은 내화구조로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어야 한다.
		4-1-3 구조		<p>(가) 다음 각항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 3층이상의 백화점, 판매장, 시장 및 여관, 호텔등 특별피난계단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개층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축물 ② 특별피난계단을 갖추지 아니한 5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4-2 옥 외 피	4-2-1 외 관	4-2-1 옥 외 피	외 관	<p>(가) 다음 각항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층이상의 백화점, 판매장, 시장 및 여관, 호텔등 특별피난계단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개층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건축물 ② 특별피난계단을 갖추지 아니한 5층이상 10층이하의 건축물
		4-2-2 구조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이 백화점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각층의 판매장 및 옥외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개이상의 옥외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② 옥내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문은 갑종방화문 구조로 되어야 한다.

피 난 계 단	4-3 특 별	4-3-1 설치대상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출입문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내화구조로서 지상까지 직통하는 계단구조이어야 한다. ⑤ 계단의 유효폭이 9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단은 실내로 통하는 다른 개구부로부터 2미터이상 격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3-2 계단설치	능	<p>(가) 다음 각항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상11층 이상 또는 지하3개층 이상을 가진 건축물 ② 3개층 이상의 층을 백화점, 판매장, 특수매장, 음식점, 호텔,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지상 31미터이하의 건축물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상 11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전층에 있는 상용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구조이어야 한다. ② 지상 3층이상을 백화점, 매장, 음식점, 호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3층이상의 층에 있는 판매장 및 옥상광장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개이상의 상용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여야 하며 옥외 피난계단은 방연 방화구조의 직통계단이어야 한다. ㉡ 지상 5층이상을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1개이상의 특별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피난계단은 방화방연구조로 하되 옥외피난 계단중 1개이상이 특별피난구조이어야 한다. ③ 5층이상을 백화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넘으면 옥내에 설치하는 상용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을 방화방연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가 넘는 경우에는 매 3,000평방미터마다 4층이하의 층의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특별피난계단설치를 하여야 한다.
	4-3-3 조 구	외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옥내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이 (전실)설치되어야 한다. ② 노대 및 부속실 넓이는 2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계단실 및 부속실의 구조는 외기에 접하는 부분“배연설비부분”“출입구부분”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바닥, 벽, 천정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④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상 유효한 개구부나 예비전원을 갖춘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전실)에 면하는 부분 이외에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단실의 노대 부속실(전실)에 면하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옥내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전실)에 통하는 출입문은 방연구조의 갑종방화문이어야 한다. ⑧ 옥내로부터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문은 상시 개방되었다가 화재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⑨ 노대 또는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문은 망입 유리낀 갑종방화문 구조의 것. 또는 망입 유리낀 방화문 구조이어야 한다. ⑩ 계단조 및 출입문 개방방향은 피난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5. 피 난		외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준,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난계단은 거실의 각부분으로부터 다음에 정한 거리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화점등 : ①내화구조의 것 -30미터 ㉡기타 구조의것은 30미터 ㉢ 병원, 호텔,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등 :

계 단 의 수		관	<p>① 내화구조의 것 - 50미터 ② 기타구조의 것 - 30미터</p> <p>㉔ 기 타 : ① 내화구조의 것 - 50미터이내 ② 기타구조의 것 - 40미터이내</p> <p>② 다음에 정한 각항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통계단은 2개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p> <p>㉑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 100평방미터 이상.</p> <p>㉒ 병원, 의원, 백화점, 숙박용 건축물, 아파트, 기숙사등의 용도로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 바닥면적 150평방미터 이상</p> <p>㉓ 기타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p>
6. 계 단 의 폭		외 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p>① 계단의 폭, 단높이, 단너비는 다음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㉑ 국민학교 학생용 계단은 계단폭의 경우-140센티미터 이상</p> <p>㉒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용 계단의 계단폭-140센티미터이상</p> <p>㉓ 백화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 집회장-단폭-140센티미터 이상</p> <p>㉔ 직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가 넘을 경우 또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1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계단폭-120센티미터 이상</p> <p>㉕ 기타의 계단 : ① 계단폭-75센티 이상</p> <p>② 계단창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p>㉑ ①항의 ㉑-㉓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높이가 3 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3미터마다 계단창을 설치하여야 한다.</p> <p>㉒ ①항의 ㉔-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단높이가 4 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4미터마다 계단창을 설치하여야 한다.</p> <p>㉓ 계단창의 폭은 (가) ①항의 ㉑-㉕의 중별로 계단폭과 같은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p> <p>③ 백화점 경우에는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에 통하는 출입구의 계단 유효폭은 다음 기준과 같이하여야 한다.</p> <p>㉑ 계단의 유효폭은 지상층의 경우에는 2층계단을 사용하는 지상층이상의 각층바닥면적 합계를 100으로 나누어 다시 6센티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의 폭이어야 한다.</p> <p>㉒ 계단의 유효폭은 지하층의 경우에는 2계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으로 나누어 다시 40센티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의 폭이어야 한다.</p> <p>㉓ 출입구의 유효폭은 각층마다 2개층의 바닥면적을 100으로 나누어 다시 27센티미터를 곱하여 얻은 수치이상의 폭이어야 한다.</p> <p>㉔ 출입구의 유효폭은 백화점에 있어서 전시계단 및 출입구 유효폭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상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출입구의 폭은 산정된 폭의 1.5배의 폭이어야 한다.</p>
7. 블 연 재 시	7-1 대 상	외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p> <p>①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공회당, 집회장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객석 또는 집회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400평방미터)</p> <p>② 병원, 숙박업소, 아파트, 기숙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3층 이상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주요구조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00평방미터)</p> <p>③ 백화점, 시장, 유흥음식점, 무도장 기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p>

설	7-2 불연재시설	관	④ 차고, 자동차, 수리공장, 주유소, 위험물저장고 ⑤ 5층이상인 건물에 있어서 5층이상의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를 넘는 경우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점) ㉠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없는 경우에는(지붕 또는 직상층 바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로 준불연재로 또는 난연재로로 끝마감을 하여야 한다. ㉡ 거실로부터 지상에 통하는 주된 복도 및 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끝마감을 불연재로 하여야 한다.
---	-----------	---	---

점검 항목		점검 착안 및 확인 사항	
	3-2-12 유수시험배관	외관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① 물채움식(습식) 스프링클라 설비의 경우 알람벨브, 패들형 수경 스위치, 압력형 경 랜스미터, 전기스위치밸브등 유수경보장치로부터 가장 먼 스프링클라가 설치된 배관 끝에서 공칭구경 25밀리미터 글로브 밸브, 공칭구경 15밀리미터 시험 스프링클라아웃싱 및 오리피스를 갖추어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건, 준, 점) ② 공기채움식(습관) 스프링클라 설비의 경우 건식밸브(공기 채움식 밸브)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스프링클라가 설치된 배관 끝에서 시작하여 공칭구경 25밀리미터의 앵글밸브 공칭구경 15밀리미터의 시험 스프링클라아웃싱 및 압력 계기를 갖춘 시험배관 부착하여야 한다. (건, 준, 점) 설 ③ 준비작동식 및 일제분사식 스프링클라 설비의 경우 준비작동식 밸브 및 일제개방 밸브와 배수수평 주행배관 사이의 개폐표시 개폐밸브 사이에 공칭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개폐표시 개폐밸브로서 배수관과 연결 배관하여야 한다. (건, 준, 점)
	3-2-13 라이저헤드	외관	(가) 전 스프링클라 설비의 입상관의 실양정이 40미터 이상일 경우에 입상관 상부에 라이저헤드를 설치했는지의 여부 (건, 준, 점)
	3-2-14 소재배관	외관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① 가지관의 말단부분이 가지관 소재를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건, 준, 점) ② 습식(물채움식) 스프링클라의 알람벨브등 경보벨브, 건식밸브(공기채움식 밸브) 준비작동식밸브, 일제분사식밸브, 조합식밸브등 밑부분의 배관은 소재구조로 되어야 한다. (준, 점) ③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은 소재구조로 되어야 한다. (건, 준, 점) ④ 펌프식 배관은 용이한 소재구조로 되어야 한다. (준, 점) ⑤ 각구역, 용도별 스프링클라 배관의 인입구마다 각구역, 용도별 개폐표시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건, 준, 점) ⑥ 소재구 개방에 필요한 반자부분에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준, 점) ⑦ 배관소재상 필요한 가변성(可變性) 기울기틀 만들어 주기 위한 배관지지물의 구조가 갖추어야 한다. (점)
	3-2-15 방동배관	관	(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① 물채움식(습식) 스프링클라 설비에 있어 드림니플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정한 기준중 어느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준, 점) ㉠ 드림니플의 구조가 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공관(空管)니플형이어야 한다. ㉡ 드림니플속에 영구 방동액(글리세린등)이 항상 유지된 상태이어야 한다. ㉢ 드림니플속에 상시 물이 섭씨 1도이상 15도이하의 수온으로 가열하여 열을 유지시키며 매스프링클라 헤드의 작동시 매입방센티미터에 대하여 1킬로그램에서 80미터 방수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착 안 및 확 인 사 항
	3-2-16스프링크라헤드부착배관	외관	<p>② 물채움식(습식)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 공칭관경 80밀리미터 이하는 50밀리미터 두께의 공칭관경 10밀리미터 이상은 63밀리미터 두께의 보온재로 보온되어야 한다. (건, 준, 점)</p> <p>③ 물탱크 연결배관이 영하의 기온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곳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가열배관을 하거나 내용물을 가열해 주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 준, 점)</p> <p>④ 물채움식(습식) 스프링크라 설비의 전배관을 25밀리미터 이상 32밀리미터 이하 두께의 보온재로 보온해주는 경우에는 통칭구경 50밀리미터 배관내에는50퍼센트 농도 이상의 구리세린수 용액을 주입하여야 한다. (단, 경남, 전남, 이남지방의 경우 해방소방관서장은 보온재 피복 또는 구리세린 수용액 주입 중 어느 한 방법만을 택할 수 있다. (건, 준, 점)</p> <p>⑤ 물채움식(습식) 스프링크라 설비의 각종 또는 각구역별 유수검지장치에 방동액 주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준, 점) 이 경우 방동액의 배출 및 검출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준, 점)</p>
	3-2-17 밸브접결	외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p> <p>① 물채움식(습식) 스프링크라설비에 있어서 하향식 스프링크라 헤드는 회항식배관(리턴벤드)에 연결된 드렐니플에 부착되어야 한다.(건, 준)</p> <p>② (전식) 공기채움식 스프링크라 설비에 있어서 하향식 스프링 크라헤드는 드라이팬던트 드렐니플에 부착되어야 한다. (건, 준)</p> <p>③ 준비작동식 스프링크라 설비의 하향식 스프링크라헤드 스프링크라 헤드는 직하향 드렐니플에 접결되거나 “J”자형으로 꺾이어 떨어진 드렐니플에 접진 되어야 한다. (건, 준, 점)</p>
	3-2-18배수배관(排水配管)	외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준, 점)</p> <p>① 공칭구경 15, 20, 25, 32, 40밀리미터의 밸브는 나사이음 방식으로 접결한다.</p> <p>② 공칭구경 40, 50, 65, 80, 90, 100이상 밀리미터의 밸브는 후랜지이음방식 또는 카프링 이음방식으로 접결한다.</p>
4 - 1 경제구역	외관	<p>(가) 다음 각항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p> <p>① 배수구보다 한단위 구경이 큰 규격의 것이어야 한다. (건, 준, 점)</p> <p>② 배수기울기와 접합상태가 완전배수 구조이어야 한다. (준, 점)</p> <p>③ 펌프방수시험 배관에 연결되는 배수관의 구경은 공칭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건, 준, 점)</p> <p>④ 배수용(配水) 수평주행배관의 소제용 배수관은 고정식이 아닌 경우에는 호스코백션을 장치하여야 한다(건, 준, 점)</p> <p>(가) 다음 각항기준에 합치하는지의 여부</p> <p>① 스프링크라 헤드배관의 방호목적구역은 경제구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건, 준, 점)</p> <p>② 경제구역의 특성과 스프링크라헤드의 용도, 종류 및 규격이 합치하여야 한다. (건, 준, 점)</p>	
4 스프링크라헤드			